

강원도립대학교 교육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7-06-19 규정 제467호

(개정) 2020-03-16 규정 제542호

(개정) 2023-12-01 규정 제6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5조(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3조(교육과정편성), 제4조(교육과정개발 및 개편절차), 제5조(교육과정 평가), 교육 수요자 만족도조사 및 관리 규정 제8조(만족도 조사 실시), 강의평가 운영규정 제7조(평가결과의 활용)에 근거하여 교육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품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6., 2023.12.01.>

제2조(교육과정의 개편·개발) 학과는 산업전망, 인력수요와 기술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와 학생의 진로 희망, 학습여건 등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개편·개발하여야하며 교육과정의 개편·개발의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16., 2023.12.01.>

제3조(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의 개편·개발을 통해 도출된 교과목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3.16.>

제4조(평가) ① 교과목 및 현장중심의 전공교과의 평가 및 성적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적 평가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0.3.16., 2023.12.01.>

②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역량기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3.16., 2023.12.01.>

제5조(교과목 CQI) ① 매 학기 종료 시기에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과목별 개발·운영·평가 영역을 분석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환류 계획을 수립한다.

② 학과별 자체평가위원회는 교과목 운영 분석 자료와 도출된 개선사항을 참조하여 자체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③ 담당교수는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환류하고 이력을 관리한다.

제6조(학과 차원의 교육품질관리) 교육품질의 관리를 위해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 개발 또는 개편과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작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1.>

1. 학과는 지속적인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매 학기 초에 학과별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3.12.01.>

2. 학과는 매 학년도 종료 시기에 학과차원의 자체평가 자료를 준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한다.

3. 학과에서는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환류계획을 수립한다.

4. 학과는 매 학년도 마다 학과운영결과 및 개선 및 환류 계획이 포함된 교육품질관리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 교육과정평가개선위원회 또는 대학 CQI 위원회에 보고한다.

5. 학과는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을 전산시스템의 CQI 개선이력관리대장을 활용하여 환류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환류 점검을 실시한다.

제7조(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6조 4호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사지원체제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정책 등 <개정 2023.12.01.>
2. 교육성과 : 취업률, 현장실습, 자격증취득, 직무능력성취도 등
3. 교육환경 : 강의실 및 실험 실습실, 기자재 및 도구 등
4. 만족도 :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강의평가 등
5. 그 밖에 교육과정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대학 차원의 교육품질관리) ① 대학은 학과의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여야한다.

- ② 학과 및 부서의 장은 교육품질관리 보고서에 수립된 교육품질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한다.

제9조(교육품질보고서 결과 산출) 평가의 결과와 대학교육품질평가 항목의 결과를 종합하여 매 년도 학기 종료 이 후 대학 교육품질보고서를 산출하여야한다. <개정 2023.12.01.>

제10조(교육품질보고서 활용) 산출한 교육품질 보고서는 차기년도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반영 및 활용한다.

부칙(2017. 6.19.)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0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